

2025년 4월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지 정비(9차) 공사 설 계 서

설계 설명서
현황 사진첩
시 방 서
예정 공정표
원가 계산서
내 역 서
일위 대가표
단가 산출서
단가 조사표
수량 산출서
설 계 도 면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 문화사업팀

(주)상명종합건축사사무소 손 동 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13-8 현중빌딩 201호
TEL : 031-982-0095 FAX : 031-983-0095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지 정비(9차) 공사**
2. 지 정 별 : **사적**
3.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일원**
4. 총공사비 : **일금 육억오백일십구만삼천원정(₩605,193,000)**
5. 연 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북한산성 안에 있는 조선시대 후기의 임시 궁궐터로 경기도 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되었다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6월 8일 사적 제47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북한산성 행궁지는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 1711년(숙종 37) 5월에 북한산성 수축 공사를 맡았던 김우항(金宇杭)이 산성 안에 임금 행차시의 처소 또는 유사시 임금의 피난처 및 지휘소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궁궐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그 이듬해에 완공된 행궁(行宮: 임시궁궐)의 옛 터이다. 숙종 37년(1711) 8월에 착수하여 그 이듬해인 숙종38년(1712) 5월에 완공한 행궁은 왕비가 거처하는 내전(內殿)과 임금이 정사를 돌보는 외전(外殿)으로 나뉘어 지어졌는데 『북한지(北漢誌)』에는 내전영역 정전(正殿) 28칸과 좌우의 행각방(行閣房)9칸, 청(廳)5칸, 중문 1칸, 대문3칸, 수라간(守刺間: 궁궐 경비실)5칸, 등 총54칸이 지어졌고 외전은 정전 28칸을 비롯하여 외행각방(外行閣房), 누(樓), 청, 곳간(庫間) 등 부속건물이 총 61칸이 세워졌다. 행궁 전체적으로는 약 130여 칸에 이르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는 내전 터에 앞면 7칸, 옆면 4칸의 주춧돌과 온돌 유구, 기단부위의 유구 및 축대와 계단을 정비하였고, 외전지 역시 외전 초석과 좌우 헐칸의 온돌 유구 및 석축과 계단 등을 정비해놓은 상태이다. 주변에는 석축, 담장 등의 자취와 함께 기왓장들이 드러나 있다. 내전지를 중심으로 전면에 어도와 대문 외전지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고 그 좌우로 행각이 둘러싸고, 체계적인 배수처리와 후면의 화계 등은 궁궐로서의 위용을 보여 주고 있다.

1915년 7월 수해 이전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북한산행궁은 입구에서 외전을 거쳐 내전으로 오를수록 층위가 높아지며 단을 이루는 축대를 조성하고 건물을 세웠으며 팔작지붕의 내외 정전을 축으로 하여 부속건물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재의 가공과 축조방법은 당시의 성숙된 축조 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외전지 좌우헐칸에 남아있는 온돌의 유구는 당시 구들의 구조를 알 수 있고 함살아궁이의 위치도 파악된다. 북한산성 행궁지는 지형에 순응하여 축대와 배수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전각을 구성하였으며 이로써 18세기 초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의 행궁의 공간구성과 배수시설에 대한 실증자료, 사료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6. 현 황

6-1. 주변 현황

북한산성 행궁지는 상원봉 아래, 북한산성 내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행궁지의 좌향은 서남서에서 북북동쪽을 바라보는 자리로, 산등성이를 등지고 행궁지 좌 우측으로 흐르는 계곡이 행궁지 아래에서 합류하게 되어있고, 3면이 고지대로 둘러싸인 지형을 이루고 있다. 1998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5차 발굴조사까지 종료되었다. 현재는 내전 터에 앞면 7칸, 옆면 4칸의 주춧돌과 온돌 유구, 기단부위의 유구 및 축대와 계단을 정비하였고, 외전지역시 외전 초석과 좌우 협칸의 온돌 유구 및 석축과 계단, 내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정비한 상태이다. 또한, 2019년부터 행궁지 북측배수로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현재 집수지 1개소와 우측배수로 일부구간이 정비 되었다.



그림 2 행궁지 정면 상공에서 본 현황

6-2. 대상지 현황

행궁 주변의 배수로는 행궁지 외각 담장지부터 행궁지 외부 북측으로 자연 형성된 배수로로 과거 작은 도수로 정도의 배수로가 있었던 흔적이 확인되는 구간이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토사로 이루어지고, 일부구간은 초기 공사 시 임시 배수로를 화강석으로 배수로 측벽을 쌓았으나 현재 일부는 석축이 흐트러지고 변형된 것이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행궁지 외곽으로 안정적인 배수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붕괴된 배수로 측벽을 정비하고 배수로의 선형 조정 및 배수로 구조 보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태풍으로 인해 삭토된 지형을 복원하여 행궁지 내부의 유구에 대한 정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주변배수로와 유구의 정비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행궁지 상공에서 본 현황

6-3. 북한산성 행궁지 보수정비 추진

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천원)	사업내용 및 결과
2012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1차)	‘12.10. ~ ‘13.11.	300,000	내전지역 발굴조사
2013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2차)	‘13.05. ~ ‘14.12.	200,000	외전지역 발굴조사
2014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3차)	‘14.04. ~ ‘15.12.	300,000	외대문영역 발굴조사
2015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4차)	‘15.04. ~ ‘16.12.	400,000	상원암지역 발굴조사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1차)	‘15.05. ~ ‘17.02.	100,000	내전 후면 석축정비 1. 석축정비 - 하부 장대석축 22.5m - 상부 계단석축 23.1m 2. 주변정비 - 수목제거, 판축(성토)다짐
2016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2차)	‘16.06. ~ ‘18.12.	500,000	내전지 정비 1. 석축정비 - 하부 장대석축 26.8m - 상부 계단석축 37.5m - 전면석축 31.5m 2. 건물지 정비 - 내전지 - 좌행각지 2개소 점토다짐 - 대문지 석재유구 정비 3. 내부 배수로 정비
2017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5차)	‘17.10. ~ ‘18.12.	400,000	담당지역 발굴조사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3차)	‘17.07. ~ ‘19.12.	540,000	외전지 정비 1. 석축정비 - 외전지 전면석축 30.06m - 양끝단 거친정다듬 장대석 마감 2. 건물지정비 - 외전지 56.7m - 외전지 진입 어도 8.77m 3. 배수로 정비 - 외전지 전면 배수로 11.54m
2018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4차)	‘18.02. ~ ‘20.12.	600,000	북측(우측) 배수로 정비 1. 석재 집수구 설치 : 1개소 2. 집수구 날개벽 설치 : 한면 5m × 2(양쪽) 3. 배수로(가) 설치 : 9.3m 4. 목줄펜스 설치 : 12m

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천원)	사업내용 및 결과
2019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5차)	'19.05. ~ '21.12.	600,000	북측(우측) 배수로 정비 1. 배수로 설치 : 20.65m 2. 낙차공 설치 : 3개소
2020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6차)	'20.03. ~ '21.12.	300,000	행궁지 배수로 정비 설계
2021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7차)	'21.01. ~ '23.12.	900,000	북측(우측) 배수로 정비 1. 배수로 설치 : 53.7m 2. 낙차공 설치 : 4개소 3. 함류배수로 설치 : 4.5m
2023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8차)	'23.01. ~ '23.12.	300,000	행궁지 건물지, 배수로 등 정비 설계

7. 사업개요

7-1. 사업목적

- 북한산과 북한산성은 수도권의 많은 탐방객들이 이용하는 중요 유적지이며, 북한산성내 행궁은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로 역사적 가치 제고와 탐방객의 교육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과거 집중호우로 매몰되었던 북한산성 행궁지의 건물지, 배수로 정비 설계를 통해 홍수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7-2. 과업내용

- 북한산성 행궁지 권역 배수로 정비 설계
 - ▶ 행궁지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로 정비 설계
- 북한산성 행궁지 건물지, 배수로와 관련된 기타 유구 정비계획

7-3. 보수계획

- 발굴보고서 및 고증자료, 종합정비계획 등의 연구자료를 최대한 활용,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북한산성 행궁지 발굴보고서 1~5차, 2019 북한산성 종합정비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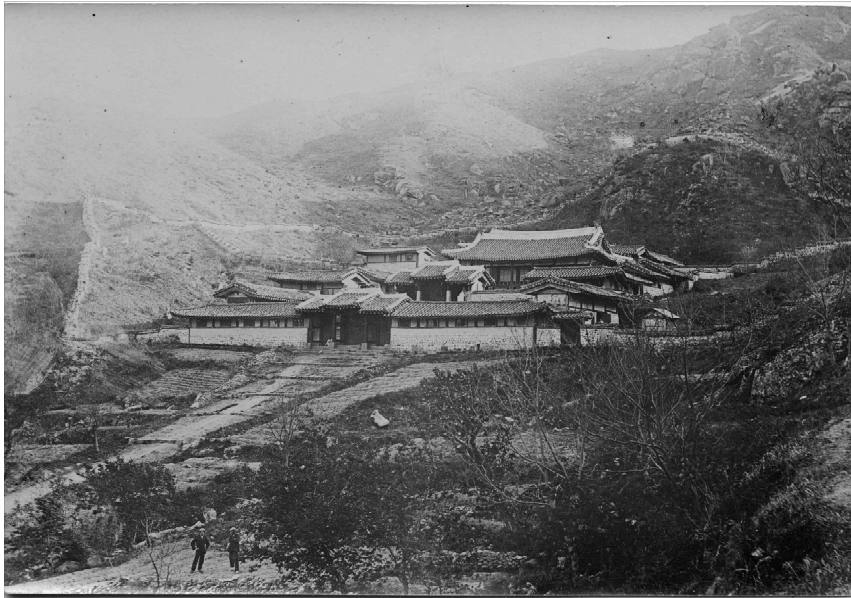


그림 4 사진-북한행궁-1915년 이전, by robert neff (2), 로버트 네프 컬렉션



그림 5 사진-북한행궁-1912~1915년 추정-북한산성 행궁 내전(성공회대학교 역사자료관 소장)



그림 6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 전경

- 현재 배수로의 선형이 과도하게 꺾여 있는 구간은 일부 선형을 정리하여 배수로가 유속에 의해 세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 배수로는 화강석을 사용한 석재 배수로를 설치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배수로를 보강한다.
- 배수로 바닥은 굴곡있는 자연석 박석을 깔아 하부 토사 유실 및 세굴을 방지한다.
- 지형을 고저차이가 많은 구간에는 낙차공을 설치하여 배수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 행궁지내 삭토된 지형은 관련 자료를 고증하여 복원한다.

8. 기타

8-1. 공사시공

-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8-2. 공사기간

-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개월으로 한다.

8-3. 설계변경 조건

-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기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공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8-4.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청 표준시방서 및 대한 건축학회와 재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설계도면, 시방서와 현장사항이 서로 다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 2) 설계도면
 - 3) 내역서

(1) 수급인의 책무

◎ 설계도서 검토

- 수리업자는 수리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수리에 잘못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 3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①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설계도서 내용이 수리현장과 서로 다른 경우
-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④ 수리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수리업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 ⑥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책임한계

- 수리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리업자가 당해 수리 공사를 위하여 입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리업자와 납품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수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수리목적물을 수리업자 등이 수리를 위해 인수받을 경우와 수리를 완료한 후 인도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한다.
- 수리목적물을 발주처에서 인수한 후부터 수리 완료 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수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리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수리업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2) 수리공사기한 연기

◎ 연기요청

- 수리업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수리공사 연장 신청서
- 수리공사 연장 사유서
- 현황 사진첨

(3)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

- 수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변경·시행할 수 있다.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수리업자 책무'에 따라 수리업자가 발주처에 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 2) 공사계획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처가 수리업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 수리대상 문화재를 해체한 결과 설계 도서에서 제시한 조건과 다른 경우
 - 수리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수리공사의 발생

- 특정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시공조건의 변경(수리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기타 수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 변경요청 서류

- 수리공사 변경계약서
- 수리공사 변경사유서
- 설계변경 전후가 대비되는 설계도면
- 설계변경 전후가 대비되는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4) 공정 및 시공계획서

- 수리공사 착공 전에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현황사진, 수리공사용 장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료(제품포함)의 검사 및 시험

- 이 시방서 각 공종 또는 설계도에서 지시하는 재료의 종류, 품질,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이 시방서 각 공종에서 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명기한 재료에 대하여 해당 공종에서 지정한 시험 또는 검사방법에 따른다.
- 품질시험검사 결과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장외 반출하고 합격품은 이 시방서 각 공종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보 0527관한다.

(6) 안전관리

◎ 일반

- 수리공사의 안전관리는 관련법규와 시방서의 각 공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수리업자는 작업장 내의 수리업자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리업자는 수리의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리현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행위(사진촬영 등)등을 통제하여야 한다.
- 수리업자는 산업 안전 보건 법 제30조 제4항(해당될 경우)에 따라 적절한 조치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를 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 발주처는 수리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리업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수리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리업자는 즉시 해당 수리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수리업자가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 황 사 진 첵

시 방 서

I. 일반시방서

II. 특기시방서

예 정 공 정 표

원 가 계 산 서

내역서

일 위 대 가 표

단 가 산 출 서

단 가 조 사 표

견 적 서

수 량 산 출 서